

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○○본부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연맹) ○○본부(이하 본부)라 칭한다.

제 2 조 (소재지) 본 본부의 사무소는 본부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 3 조 (목적) 본 본부는 ○○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기술 및 자질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아마추어무선의 지도육성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동과 회원의 편익을 인도하며 아마추어무선의 보급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 본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연맹의 제반 업무 대행
2. 아마추어무선국 기술지도, 강습회, 소양교육, 세미나 개최
3. 각종 홍보 및 섭외활동과 단체무선국의 운용
4. 원활한 전파 운용을 위하여 전파의 공정한 감시활동
5.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, 인명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전파통신의 지원
6. 본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수익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구분과 자격) 본부 회원의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 :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고 연맹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지역본부에 등록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단체무선국의 대표자는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.
2. 준회원 : 아마추어무선에 취미를 가지고 본부에 입회 수속을 마친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정관과 본 규정에 정하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규정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직원

제 7 조 (종류와 임무) 본 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이들로써 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본 부 장 : 본 본부를 총괄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역본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연맹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각종 정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2. 부분부장 :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3. 지부장 : 관할 구역 지부 회원의 대변으로 본부 업무를 대행한다.
4. 위 원 :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를 분담하며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5. 감 사 : 본 본부의 예산, 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,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8 조 (사무직원) 본 본부는 제반 업무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임원 선출 및 임기

제 9 조 (임원선출) 본 본부는 다음과 같이 임원선출을 하며 세부사항은 연맹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.

1. 본부장, 부분부장, 감사는 연맹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위원은 본부장과 부분부장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
3. 지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대우) 본 본부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 본부장 및 부분부장, 감사는 2년으로 한다. 지부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2 조 (업무의 인수인계)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의 인수인계시까지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는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5 장 회 의

제 13 조 (회의의 종류와 소집) 본 본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
1. 정기총회 : 매년 3월에 본부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 : 본부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동의에 의하여 서면 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.
3. 운영위원회 : 월 1회 정기적으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. 구성은 본부장, 부분부장, 지부장, 위원으로 한다.
4. 임 원 회 : 본부장이 소집하며 구성은 본부장, 부분부장, 감사로 한다.

제 14 조 (총회의 기능)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 처리한다.

1. 본부 제 규정의 개정
2. 사업계획과 예산, 결산 및 경비에 관한 사항
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4. 본부의 업무보고
5.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
6.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타 사항

제 15 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)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.

1. 본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
2. 연맹 정관 및 본부 제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결정
3. 예산 및 결산 집행에 관한 사항
4.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

제 6 장 재 정

제 16 조 (재 정) 본 본부의 운영은 연맹의 지원금, 회원 기타의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7 조 (회계연도) 본 본부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후원회) 본 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7 장 지 부

제 19 조 (설 치) 본 본부는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군 구 에 1개 지부를 둘 수 있다. 시라 함은 특별시, 광역시를 제외 한 것이다.

제 20 조 (운 영) 지부는 지부를 관장하는 회원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.

제 21 조 (책임자) 지부의 책임자는 지부장이라 하며, 그 구성원에 의하여 선출된다.

제 22 조 (사 업) 본부에서 위임 받은 업무의 대행, 지부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타 사업.

제 23 조 (업무보고) 지부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8 장 상 별

제 24 조 (상 별) 본 본부의 회원으로서 본 본부에 공헌 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하고, 아마추어무선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 및 효력)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총회에서 의결하고, 연맹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.(1997년 10월 14일 이사회의 의결)

제 2 조 (개 정) ① 2004. 7. 10. 제15조제1호 개정

② 2006. 1. 14. 제19조 개정

③ 2006. 10. 14. 제13조 제3항에서 감사 삭제

④ 2016. 4. 9. 제1조 개정